

6. 住宅建設基準等에관한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117號 1992. 9. 5

1. 개정이유

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업등록 및 품질검사대상자재인 콘크리트조립식부재등 주요 주택자재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생산기준을 강화하고,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(1992. 7. 25. 대통령령 제13,700호)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게 된 반면,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동 쓰레기투입시설의 설치규격 및 마감등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.
- 나. 주택자재 생산업등록 대상자재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

확보방안외에도 생산업자 스스로 자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주택자재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,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자재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험항목을 2개에서 총 13개 항목으로 늘림

- 다. 우량주택자재인정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건설부에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건설부 1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(1991. 12. 31. 대통령령 제13,563호)에 따라 우량주택자재인정에 관한 권한이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, 앞으로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함.
- 라. 주택자재 생산업등록 대상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그 생산기준을 한국공업규격(KS)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,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생산업등록 대상자재가 된 경량기포콘크

리트조립식부재와 알루미늄창호의 틀재 및 합성수지창호의 틀재에 대한 생산기준과 품질검사기준을 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

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: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

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